

#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양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이념·목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목적·목표)** ① 본교는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덕목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교육이념으로 삼는다.

② 본교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본교의 교육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열린 고등교육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근면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교양인을 기른다.
2.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을 기른다.
3.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사회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인을 기른다.
4. 문화적 다원성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인을 기른다.
5.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봉사인을 기른다.

<전문개정 2013.3.5.>

**제3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에 둔다. <개정 2018.08.28>

## 제2장 학제와 학생정원

**제4조(학제)** ① 본교에는 창의융합계열을 둔다. 창의융합계열에는 건축도시건설공학부(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제어공학과,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반도체공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국방융합기술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시비즈니스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생산물류유통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영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광고미디어학과, 교육공학과, 법·공무행정

학과, 보건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실버산업학과, 아동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군경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건축공간디자인학과, 뉴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예술문화디자인학과, AI산업디자인학과), 스푸마토(AI 융합자유전공)학부를 둔다. 실버산업학과는 2024학년도부터 모집을 중지하며 2027학년도까지 존치한다.

<개정 2011.12.01, 2012.10.26, 2013.12.24, 2014.12.19., 2015.12.28, 2016.12.20, 2018.01.22., 2018.12.13, 2019.12.31, 2020.04.23., 2020.9.2., 2020.12.14., 2021.12.24., 2022.1.19., 2022.9.27., 2022.11.16., 2023.1.2., 2023.12.8., 2024.05.09., 2024.12.23.>

② <신설 2022.1.19.> <삭제 2024.12.23.>

③ 본교에는 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미래융합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디자인대학원을 둔다 <신설 2022.1.19.> <개정 2024.12.23.>

#### 제4조의2(공유전공)

<본조 신설 2018.12.13, 개정 2019.12.31., 2020.12.14., 2022.1.19.> <삭제 2024.12.23.>

**제4조의3(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부)”라 한다)를 본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9.27>

**제5조(정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학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2.01., 2022.9.27>

###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조기졸업)**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제 48조 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나, 그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6학기 또는 7학기 만에 졸업자격을 갖추 수 있는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③ 주전공 졸업요건 충족 후에도, 졸업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8.>

④ 계약학과와 수업연한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신설 2024.05.09>

**제7조(재학연한)** ① 본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단, 계약학과와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신설 2024.05.09>

##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8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연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③ 계절학기는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 운영한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단축)**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5.07>

**제11조(정기휴업)**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구정, 추석 등 명절과 각종 국경일
4. 개교기념일

**제12조(임시휴업)** ① 총장은 입학식, 졸업식, 비정기 시스템점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5.07>

##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3조(입학시기)** ① 입학허가는 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하여 매학기 개시일부터 4주(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신입생 입학허가는 매년 1학기, 2학기 두 번 나누어 할 수 있다.

**제14조(모집방법)**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로 한다. <개정 2012.10.26>

**제15조(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2.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개정 2013.12.24>
3.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졸업한 자 <개정 2013.12.24>
4. 외국에서 초·중·고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6조(지원절차)** ① 본교에 입학을 지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한 후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2.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개정 2015.12.28>

**제17조(전형방법)** ①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전형방법에 의한다.

②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대학별고사,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4.12.19, 2015.12.28>

**제1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사정원칙 포함)제도 개발 및 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입학사정위원회를 겸한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당해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며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편입학)** ① 일반편입학은 제2학년, 제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 인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개정 2009.06.22>

1.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의 1, 2학년 이상 수료하고 각 35학점,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국내외 전문(2, 3년제)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처벌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제외) <개정 2009.05.07, 2014. 12. 19>

2. 편입인원 :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개정 2009.06.22>

② 학사편입학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되, 정원 외로 선발한다.<개정 2009.05.07>

**제21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본교 학사 제적자에 대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벌에 의해 제적된 자와 산업체, 군, 중앙정부공무원위탁생중 재입학당시 해당 기관 및 기업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삭제 2018.01.22>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8.08.28., 2023.1.2>

⑤ <삭제 2018.01.22.>

⑥ 계약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신설 2025.05.09>

**제22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할 수 있다.

1. 기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입시 부정행위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4. 지정한 기간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7장 등록

**제23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제24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강과목변경)** 수강과목의 변경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6조(휴학/전과(부)/전공변경)** ① 질병, 임신 및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② 개인사정에 의한 일반휴학은 개강전 별도 공고되는 휴학 신청 기간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 입학(신/편입) 첫 학기 이수 후부터 가능하다. <개정 2014.12.19>

③ 학기 내 휴학시 기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학기이로 이월한다.

④ 전과(부)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3>

⑤ 학칙 48조의 1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른 동일학부 내 전공변경은 매 학기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07.21>

⑥ 전공변경 시 졸업이수 요건은 변경 후 전공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6.07.21>  
<개정 2016.07.21.>

**제27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계속하여 2학기이로 하며, 휴학신청은 재학기간 중 총 3회에 한한다.

**제28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등록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8.08.28>

<제목개정 2018.08.28.>

**제2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2.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 제9장 교과목 이수 및 제재

**제31조(교과목)** ① 본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② 단, 계약학과의 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신설 2024.05.09>

**제32조(교과목 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3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의 제청을 통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4.05.09.>

② 본교의 교양교육과정은 교무처의 제청을 통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4.05.09., 2025.04.29.>

③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과는 별도로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비교과교육과정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4.05.09>

**제33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교는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5.09.>

**제33조의3(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이

본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와 해당대학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24.05.09.>

**제33조의4(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① 본교는 재학생 및 시간제등록생을 대상으로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미션나노디그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에서 정한 미션나노디그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③ 미션나노디그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4.29.>

**제34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온라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4.23>

② 원격수업은 강의 콘텐츠를 운영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강의이며, 원격으로 진행되는 실습 수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04.23>

③ 출석수업은 현장에서 실시간 대면으로 진행하는 강의와 실습이다. <신설 2020.04.23>

④ <신설 2020.04.23.> <삭제 2023.12.8.>

**제35조(이수학점)** ①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단, 탄력학기인 경우 취득기준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9.05.08>

② 학생은 매 학기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회봉사, 학생지도 및 학교 특성화 과목은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28., 2018.12.13., 2024.07.25>

③ 전(前)학기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정규학기 이수학점과 당해 계절학기 이수학점을 합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3.10.16, 2019.05.08>

④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최소학점 보다 적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6.12.20.>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는 탄력학기를 재학 중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입학(편입학 포함)후 첫학기에는 탄력학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9.05.08., 개정 2021.12.24>

**제36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한다.

**제37조(학업성적/출석)**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 및 기타 교수가 정한 평가자료로 종합 평가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해당 학기 과목당 전체 수업의 3/4 이상 출석한 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23.12.8.>

④ 출석관리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성적평가)** ① 평가는 인터넷 등 통신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D+	65~69	1.5
D0	60~64	1.0
F	0~59	0

**제39조(급제)**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D0급 이상을 급제로 한다.

**제40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① 학업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③ 국내, 외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제41조(졸업취소)** 졸업생으로 전조의 학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제42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에 걸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할 수 있으며, 3회 경고를 받을시 중간에 휴학기간이 있더라도 연속으로 본다.

**제43조(낙제된 과목의 이수)** 낙제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수료 인정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각 학년별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며,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45조(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①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편입학자중 계열변경자 및 전공변경자는 소속 학과(부)장이 지정하는 선수강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타 교육기관의 학점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타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4.05.09.>

**제47조(졸업요건과목)** 학생이 입학이나 학적변동에 따라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지정하는 교과이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8.12.13, 2020.04.23>

<제목 개정 2016.12.20., 2020.04.23>

**제48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호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는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1.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6.12.20>

2. 전학년의 평점 평균이 1.50 이상인 자 <개정 2013.3.5>

3.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6.12.20, 2020.04.23>

② <삭제 2013.12.24>

③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및 복수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④ 계약학과, 스포츠학부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신설 2024.05.09.> <개정 2025.04.29.>

**제49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제50조(부전공)** 부전공 이수 희망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1조(복수전공)**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2조(직무경력에 따른 학점 인정)** ① 정원외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공무원이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을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점인정 기준 및 인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8.>

##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5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에 있어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종전 52조에서 53조로 항번호 변경, 2023.12.8>

**제54조(징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교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한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다만, 제1호, 제2호는 소속 학과(부)장이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제3호, 제4호는 소속 학과(부)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종전 53조에서 54조로 항번호 변경, 2023.12.8>

**제55조(상벌규정)**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종전 54조에서 55조로 항번호 변경, 2023.12.8>

## 제11장 등록금

**제56조(수업료)**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수강신청 완료후에 수업료 및 실습을 위한 실비, 기

타 소정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1>

②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2.22>

**제56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07.14.>

**제57조(복학생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등록금의 반환)** ①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1.2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3.1.20.>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신설 2012.08.14>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한 학기 기본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화된 경우, 매 학기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 정정 및 변경, 학점포기에 의해 총 신청학점 수가 줄어든 경우는 등록금 등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59조(등록금의 면제)**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경제상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반액을 국고가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등록금을 면제한다. 다만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총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장 장학금

**제60조(장학금)** 본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본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장 공개강좌, 정원의 학생

**제61조(공개강좌)** ① 본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③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62조(위탁생)** ① 관계법령이 정한 기관 및 산업체의 장과 본교 총장이 위탁교육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수강대상자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에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위탁교육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위탁생의 제명)**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단,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63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1.2.22>

**제64조(시간제등록)** ① 일반사회인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와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대학(전문대학)에 재적 중인 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진행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09.05.07>

② 시간제 등록생이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05.09.>

③ 시간제 등록생은 자기소개서 등을 전형에 반영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9.05.07, 2012.10.26>

④ 시간제 등록생은 계열별로 선발하고 본교 학생과 통합 수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모집인원은 해당학년도 본교 입학정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3.10.16, 2016.12.20>

⑤ 시간제 등록생의 계절학기는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에 한해 가능하며, 재수강 과목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05.07, 2018.01.22>

⑥ 시간제 등록생들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 자동화된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엄정한 평가관리를 위해 근거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여 5년까지 보관한다.<신설 2009.05.07> <개정 2018.01.22>

**제65조(학점은행제)** ① <삭제 2009.05.07>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외국인, 재외국민)** ①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본교의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 지원자격은 해당 학년도 입학 모집요강에 따른다. <개정 2023.12.8.>

② 전 제1항으로 입학한 외국인의 학사관리 및 졸업요건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23.12.8.>

**제67조(비용징수)** 공개강좌, 위탁생, 시간제등록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4장 직제

**제68조(교직원)** ① 본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둔다.

**제69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 연구를 담당한다.  
③ 직원은 학교의 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70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 제15장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제목 정정 2021.4.21]

**제71조(교무위원회)** ①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4.21>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1>  
[제목 정정 2021.4.21.]

**제72조(구성)** <삭제 2021.4.21>

**제73조(소집)** <삭제 2021.4.21>

**제74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본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은 매 회계년도 초에 공개되어야 한다.

**제75조(성원)** <삭제 2021.4.21>

**제76조(기타 위원회)** ① 이 대학의 교육, 연구 및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장은 기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 149조에 근거하여 본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8.28.>

**제77조(학생회)** ① 본교에 학생회를 두며 이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 한다.

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를 받고 등록을 함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 제적, 자퇴,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제16장 학생활동

**제78조(학생회비)** ①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79조(학생활동 금지)** ① 학생회는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
2. 학외에서 대학명의를 정치적 활동
3. 본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5.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행위

**제80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회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학교 홈페이지의 광고, 자료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81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처벌)** ①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부)장 및 회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 제17장 학칙개정절차

**제83조(학칙개정)** 본교의 학칙개정 절차는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공고를 통하여 조정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 2013.12.24., 2021.12.24>

## 제18장 대학원

**제84조(대학원)** 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미래융합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디자인대학원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1.12, 2014.12.19., 2020.9.2., 2024.12.23.>

## 제19장 부속기관

**제85조(부속기관)** ① 본교의 부속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장애·소수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 취창업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1.02.22, 2019.08.30, 2020.04.23., 2021.4.21., 2022.4.25., 2024.12.23.>

② 본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을 둔다. <개정 2012.10.26>

③ 전항의 부속기관 및 수탁운영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26>

## 제20장 산학협력기관 <본장신설 2019.12.31>

**제86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87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의 교지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시설 또는 교직 밖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

③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본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과·학부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신설 2020.11.17>

④ 기타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조문번호 변경 2020.11.17>

<본조신설 2019.12.31>

**제87조2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5%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7.>

**제87조3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①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직접 기여한 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순수익 등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7>

## 제21장 자체평가

**제88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0.30> <중전 제20장 86조에서 제21장 88조로 이동, 2019.12.31>

## 보 칙

**제89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9.10.30> <중전 87조에서 89조로 이동, 2019.12.31>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58조 2항 [별표 3]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9조 1항 2호는 2008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 35조 2,3항은 2009학년도 신/편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07학번부터는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2007학번 이전 재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3)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58조 2항 [별표 3]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4조 명칭 변경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학과(부)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실버산업학과는 시니어비즈니스학과로 변경한다.
2. 호텔관광경영학과는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로 변경한다.

(3)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는 변경 전 학과(부)명으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부동산도시미래학부 학과제 전환 및 디지털건축도시학과의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 및 별표1, 별표2의 부동산학과,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에 관한 사항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인문사회계열 부동산도시미래학부 디지털건축도시전공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학계열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로 입학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인문사회계열 부동산도시미래학부 부동산자산관리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인문사회계열 부동산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인문사회계열 부동산도시미래학부 디지털건축도시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공학계열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④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인문사회계열 부동산도시미래학부의 부동산자산관리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부동산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부동산학사(부동산학전공)를, 디지털건축도시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공학사(디지털건축도시전공)를 수여한다.

(3) (교육과정 체계 개편 및 졸업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1조(교과목)의 전공 및 교양과목 변경사항은 2017학번부터 적용한다. 단, 2016년 이전 학번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필수과목을 유지하며, 2019학년도부터는 개정된 학

칙에 따라 일괄 적용한다. <개정 2018.12.13>

② <삭제 2018.12.13>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 및 별표1, 별표2의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및 실버산업학과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인문사회계열 인사조직·전략경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인문사회계열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인문사회계열 시니어비즈니스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인문사회계열 실버산업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 ③ [별표2]학사학위수여구분 양식은 2018년 8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에 따라 학부(과) 명칭변경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의 소속 변경과 관련한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전공은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로
  2. 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차IT융합공학전공은 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차IT융합공학과로
  3.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건축도시건설공학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로
  4.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로
  5.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로
  6.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컴퓨터공학과로
  7.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 해킹보안학과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해킹보안학과로
  8. 경영학부 경영정보전공은 경영학부 경영정보학과로
  9. 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은 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과로
  10. 경영학부 마케팅전공은 경영학부 마케팅학과로
  11. 경영학부 서비스·생산·물류전공은 경영학부 서비스·생산·물류학과로
  12. 경영학부 인사조직·전략벤처전공은 경영정보전공은 경영학부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로
  13. 경영학부 재무·회계·세무전공은 경영학부 재무·회계·세무학과로
  14.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로 입학한 학생이나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중 택일, 미선택의 경우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관광호텔경영학과로 \*학위명(경영학사-호텔관광외식경영학전공) 선택 가능
  15.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는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외식경영학

과로

16. 경제금융학과는 사회과학부 경제금융학과로
17. 광고미디어학과는 사회과학부 광고미디어학과로
18. 부동산학과는 사회과학부 부동산학과로
19. 실버산업학과는 사회과학부 실버산업학과로
20. 교육공학과는 사회과학부 교육공학과로
21. 보건행정학과는 사회과학부 보건행정학과로
22. 사회복지학부는 사회과학부 사회복지상담전공,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사회복지시설경영전공으로 하되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로
23. 아동학과는 사회과학부 아동학과로
24. 법학과는 사회과학부 법학과로 하되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사회과학부 법·공무행정학과로. 3년이 지난 이후 복학하는 경우, 사회과학부 법학과, 법·공무행정학과 중 택일, 미선택의 경우 법·공무행정학과로 \*학위명(법학사-법학전공)
25. 상담심리학부 미술치료학과는 심리상담학부 미술치료학과로
26.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는 심리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로
27. 상담심리학부 청소년상담학과는 심리상담학부 청소년상담학과로
28. 영어학과는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로
29. 일본어학과는 국제언어문화학부 일본어학과로
30. 디지털디자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나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학과, 뉴미디어디자인학과, 디자인기획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중 택일, 미선택의 경우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학과로 \*학위명(디자인학사-디지털디자인학전공) 선택 가능
31. 공간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학과로
32. 디자인학부 뉴미디어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뉴미디어디자인학과로
33. 디자인학부 디자인기획전공은 디자인학부 디자인기획학과로
34.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과로
35.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별표2] 학사학위수여구분 양식은 2019년 8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탄력학기 시행일 및 경과조치) 학칙 제35조 ⑤항 1,2,3호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개정 2019.08.30)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에 따라 학부(과) 명칭변경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의 소속변경과 관련한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정보시스템통신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경영정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경영정보·시비즈니스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글로벌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4. 서비스·생산·물류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생산물류유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5. 관광호텔경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관광호텔항공서비스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6. 경제금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7. 광고미디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광고영상창작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8. 교육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플랫폼교육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9. 청소년상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청소년코칭상담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10. 공간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건축공간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11.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리빙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12. 디자인기획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예술문화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1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에 따라 학과 명칭변경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의 소속변경과 관련한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호텔경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졸업연한(2년) 이후에는 관광항공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관광호텔항공서비스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중인 학생 포함)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관광항공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제19장 부속기관 제 85조(부속기관)의① 개정학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제9장 교과목 이수 및 제재 제35조 (이수학점)의⑤항의 개정학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에 따라 학과 명칭변경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의 소속변경과 관련한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2020학년도 이전에 광고미디어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광고미디어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광고영상창작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 중인 학생 포함)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광고미디어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2.4.25.>

- (1) (시행일) 제 19장 부속기관 제85조(부속기관)의 ①개정학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1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에 따라 학과 명칭변경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의 소속변경과 관련한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2020학년도 이전에 청소년상담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청소년상담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청소년코칭상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중인 학생 포함)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청소년상담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 부 칙 <개정 2023.1.2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3.12.8.>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및 폐과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4조에 따라 학과 명칭변경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의 소속변경과 관련한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통신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중인 학생 포함)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해킹보안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중인 학생 포함)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국방융합기술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플랫폼교육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중인 학생 포함)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교육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4. 실버산업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중인 학생 포함) 2028년 3월 1일부터 사회과학부 혹은 경영학부 내 학과로 학적을 변경하며,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변경 후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5.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입학 당시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3) (직무경력에 따른 학점 인정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 52조는 2024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및 폐과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4조에 따라 학과 명칭변경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의

소속변경과 관련한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항공경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중인 학생 포함) 졸업연한(3년) 이후에는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중인 학생 포함) 2025학년도부터 건축도시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리빙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휴학중인 학생 포함) 2025학년도부터 AI산업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4.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입학 당시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 (3) (공유전공학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가치플랫폼전공, 산업공학전공, 심리학전공의 부복수전공 신청은 2025년 1월까지 접수하고, 교육과정은 2026년까지 운영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치학과 및 정원 <제목개정 2022.9.27, 전면개정 2022.9.27., 개정 2022.11.16., 2023.12.8., 2024.12.23.>

모집단위	학부	학과	1학년	3학년
창의융합 계열	건축도시건설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	{300}	1,440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공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 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생산물류유통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2,000	
		일본어학과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광고미디어학과		
		교육공학과		
		법·공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뉴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예술문화디자인학과		
		AI산업디자인학과		
스푸마토학부(AI융합자유전공학부)				
계			3,440	

※ { }안의 숫자는 반도체공학과 정원외 입학인원으로 전체정원에 미포함됨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는 한국어·문화전공 및 한국어교육전공으로 구분되며, 한국어·문화전공은 외국인전형 신입학, 한국어교육전공은 3학년 별도편입학으로 모집

###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

<개정 2011.12.01, 2013.3.5, 2013.12.24, 2014.12.19, 2015.12.28, 2016.12.20, 2018.01.22, 2018.12.13, 2020.04.23., 2020.12.14., 2022.1.19., 2022.9.27., 2023.1.2., 2023.12.8., 2024.12.23.>

학위종류	종별학위	해당학과(부)
학사학위	공학사 (전공명칭)	기계제어공학과, 자동차IT융합공학과,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시스템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공유전공(산업공학), 공유전공(사이버보안), 반도체공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국방융합기술학과, 스마트배터리공학과, 건축도시공학과,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문학사 (전공명칭)	실버산업학과, 교육공학과, 플랫폼교육공학과(교육공학), 아동학과, 군경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청소년코칭상담학과(청소년상담학)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이학사 (전공명칭)	공유전공(심리학)
	부동산학사 (전공명칭)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사 (전공명칭)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부

보 건 행 정 학 사	보건행정학과
법 학 사	법학과, 법·공무행정학과
경 영 학 사 ( 전 공 명 칭 )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생산물류유통학과,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공유전공(경영학), 관광호텔경영학과, 관광호텔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항공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경 제 금 융 학 사	경제금융학과
경제금융자산관리학사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광 고 미 디 어 학 사	광고미디어학과, 광고영상창작학과
디 자 인 학 사 ( 전 공 명 칭 )	공간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디지털디자인학과, 뉴미디어디자인학과, 디자인기획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리빙디자인학과, 예술문화디자인학과, AI산업디자인학과
공유가치플랫폼학사	공유전공(공유가치플랫폼)
융 합 학 사 ( 트 랙 명 칭 )	스푸마토학부(AI보안 트랙, AI디자인엔지니어링 트랙, AI실버케어 트랙)

**[별표 3] 수업료 반환기준**

① 수업료 반환기준표

반환사유발생일	개정반환금액	비고
당해 학기 개강일 전	전액을 반환함	<삭제 2012.3.21>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30일까지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해당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91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휴학 학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함  
 가. 휴학생이 휴학 중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나.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복학학기 개시 전 자퇴하는 경우  
 다.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복학학기가 개시되었으나 미등록 상태로 자퇴하는 경우  
 라.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미등록 제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8.14> <개정 2014.12.19>

② <삭제 2023.1.20.>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다음의 학위를 수여함

학 위 번 호 : 한양사이버대0000(학)○○○○

학위 및 전공 : ○○○학사(○○○전공)

○○○학사(○○○전공)

부전공 : ○○○

년 월 일

한 양 사 이 버 대 학 교 총 장 ( 학 위 ) ○ ○ ○